

신규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<p>제 2 조(업무) 센터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. 대학 사회봉사단 구성 및 운영 3. 대학 개별 봉사단체 지원 4. 대학 봉사활동 현황 관리 5.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업무 	<p>제 2 조(업무) ① 센터는 제 1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. 대학 사회봉사단 구성 및 운영 3. 대학 개별 봉사단체 지원 4. 대학 봉사활동 현황 관리 5. 기타 센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업무 <p>② 학생봉사활동 정책 및 교과목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혁신센터에서 따로 정한다. (신설)</p>
<p>제 3 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무안전팀장이 겸직한다. 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 및 겸직 직원을 둘 수 있다.</p>	<p>제 3 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무팀장이 겸직한다. ② 센터의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 및 겸직 직원을 둘 수 있다.</p>
<p>제 6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. 센터의 제규정 제정 및 개.폐에 관한 사항 4.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5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	<p>제 6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.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. 센터의 제규정 제정 및 개.폐에 관한 사항 4. 삭제 5.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00월 0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시행된 것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